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04. 9. 20(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04년 9월 6일

상정일자 :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9. 15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제안이유

○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증원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2,484명에서 2,494명으로 10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3명에서 1,393명으로 10명 증원(안 제2조 제1호)

※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없음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희생자·유족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호적 등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승인된 정원은 6명으로 단장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이며
- 국가기반보호담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적·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업무는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안전계획 수립·집행, 예방조치 및 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동원 명령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등이며 승인된 정원은 1담당 4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과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등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업무는 영동군에 실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도 지원단과 영동군의 역할 국가사무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의 국가 지원 내용, 국가기반보호업무와 기존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의 중복·모호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484명”을 “2,49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83명”을 “1,393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칙(조례 제2812호)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구조 문 대 비 표

###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48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83명</u></p> <p>2.~4. (생 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                      ..... <u>2,494명</u> .....                      .....</p> <p>1. .... : <u>1,393명</u></p> <p>2.~4. (현행과 같음)</p>

###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자치행정국) (생 략)                      &lt;신 설&gt;</p> <p>부 칙(2004. 8. 2 조례 제2812호)</p> <p>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u>2007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p>	<p>제7조 (자치행정국) (현행과 같음)                      12. <u>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u></p> <p>부 칙(2004. 8. 2 조례 제2812호)</p> <p>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u>2007년 6월 30일</u>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u>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u>의 존속기한은 <u>2005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④ (생략)